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403

발의연월일: 2021. 9. 2.

발 의 자 : 홍기원 · 김경협 · 김영배

박상혁・박 정・윤미향

유영덕 • 조오섭 • 조응천

허 영ㆍ이수진・오기형

천준호 · 황운하 · 윤재갑

이수진(비) · 김영주 · 이형석

김회재 · 우워식 의위

(2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의 면적, 규모 등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해체 시 기본이 되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가 작성하고 해체허가 대상만 건축사나 기술사 등의 전문가는 작성된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어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작성 내용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제도로 정비가 필요함.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장 점검 결과에서도 해

체계획서의 작성 부실과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태만 등이 다수 지적된 것으로 밝혀져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관리와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자의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하고자 하며,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함(안 제30조).

또한,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하고(안 31조 및 31조의2),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하가와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0조의3).

그리고, 해체공사 사고 등 건축물의 사고 발생 시에 사고원인 규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안 제50조),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4조).

법률 제 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 받아야 한다.
-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작성 또는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해체계획서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 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심의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제1항의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제30조의4 및 제30조의2로 하고,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또는 제30조의2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외의 사항은 제33조에 따른 해체공 사 완료신고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 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 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해체감리자 및 감리원 모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해 체공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 해체계획서의 검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교육의 제작·홍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6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5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

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함"을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함"으로 한다.

- 9.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 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0. 제30조제4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1.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 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30조제4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 제30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 10.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 11.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2.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3.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완료신고 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 만, 제30조의3, 제51조의2제4호, 제5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부터 제7 항까지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 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 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 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 우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 받아야 한다.
-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 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 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 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 로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 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이 나 제5항에 따라 작성 또는 검

다.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3. 안전진단전문기관 <신 설>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체계획서의 작성내용 등에 관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 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 는 해체계획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 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 다.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 설>

<신 설>

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u>자</u>
-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이나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u>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u>

<신 설>

④·⑤ (생 략)

제30조의2(현장점검)(생략)

<신 설>

고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 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제 1항의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 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를 요청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⑨(현행 제4항 및 제5항과같음)

<u>제30조의4</u>(현장점검) (현행 제30 조의2와 같음)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또는 제30조의2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 다. <u>제30조의3(</u>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u>7</u> (생 략)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가리라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외의 사항은 제33조에 따른 해
체공사 완료신고를 할 때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
여야 한다.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현행 제30조의3과 같음)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u>제외한다) 중 제31조의</u>
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 감
리업무를 하려는 자(해체감리자
및 감리원 모두 해당한다)는 국

<u>토교통부령에 따라 해체공사 감</u> 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하 "해체공사 교육기관"이라 한 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고리 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 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 해체계획서의 검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교육의 제작・홍보 등에 대해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 ⑩ (현 행과 같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0조제 2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 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 ⑩ (생략)

<신 설>

① (생략)

-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7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 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 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 4. (생 략) <신 설>
 - ③ ~ ⑤ (생 략)
-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8. (생략)
 - 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u>있다.</u>
ـ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제46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
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①
1. ~ 8. (현행과 같음)

9.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9.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작성 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제 출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신 설>

<신 설>

10.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계 12.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 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 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1. · 12. (생략)

② (생략) <u><신</u>설>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

- 10. 제30조제4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를 부실하거나 이 법 또 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 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
- 11.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검 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 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함---

13. • 14. (현행 제11호 및 제12 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4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
 -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1.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체계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 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 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 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 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30조제4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를 부실하거나 이 법 또 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 성한 자
-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

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자

<삭 제>

<u>니한 자</u>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	<u><삭 제></u>
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u><삭 제></u>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u>자</u>	
<u>5. 제22</u> 조제1항에 따른 보수·	<u><삭 제></u>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삭 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	
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	
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u>자</u>	
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	<u><</u> 삭 제>
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	
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	<삭 제>
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u>자</u>	
9.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삭 제>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u>10.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u>	<u><삭 제></u>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 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 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 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 니한 자
-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 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한 자
- 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 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

- 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u>자</u>
- 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
 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
 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 제30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작성 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 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 10.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검 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 11.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u>자</u>
- 12.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 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2. · 5. (생략)

-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완료 신고 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의2.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u>제4항</u>-----

-----**.**